|  |  |  |
| --- | --- | --- |
| **출판물 수입 비안(備案) 관리방법**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해관총서령 (제12호)  <출판물 수입 비안(備案) 관리방법>이 2016년 4월 26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해관총서의 동의를 거쳐 공표하는 바이며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장 : 니예천시(聂辰席)  해관총서 서장 : 위광저우(于廣洲)  2017년 1월 22일  제1조 출판물 수입 비안(備案) 행위를 규율하고 출판물 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 관리조례>, <음향영상물제품 관리조례> 등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출판물 수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이 방법에서 출판물이라 함은 국내로 수입되는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영상물제품(완제품) 및 전자출판물(완제품),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 등을 지칭한다.  이 방법에서 출판물수입경영업체라 함은 <출판관리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출판물 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를 지칭한다.  제3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허가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출판물 수입 경영 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출판 관리조례>와 이 방법의 요구에 따라 성급 이상 출판행정주관부서에서 출판물 수입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출판물수입경영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해주지 아니한다.  비안(備案) 업무를 담당하는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는 관련 비안(備案) 정보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의 비안(備案) 업무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실시한다.  제5조 도서를 수입하는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수입하기 전에 성급 이상 출판행정주관부서에 수입 비안(備案)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신청 시 비안(備案)신청서와 출판물수입경영업체가 발행한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비안(備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 명칭;  (2) 출판기구;  (3) 수출국(지역);  (4) 저자;  (5)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6) 언어;  (7) 수량;  (8) 유형;  (9) 수입항;  (10) 구매자;  (11) 제출이 필요한 기타 서류.  제6조 성급 이상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출판물수입경영업체의 도서 수입 비안(備案)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도서목록 비안(備案)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비안(備案)을 허가하는 경우 비안(備案) 업무를 담당한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출판물수입경영업체에 통관레터를 발행한다.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통관레터를 세관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규정에 따라 검사•통관허가 수속을 처리한다. 통관레터가 결여된 경우 세관은 통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음향영상물제품(완제품) 및 전자출판물(완제품)을 수입하는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음향영상물제품 수입 관리방법>, <전자출판물 출판 관리방법>의 요구에 따라 해당 수입허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출판물경영수입업체는 허가문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규정에 따라 검사•통관허가 수속을 처리한다. 허가문서가 결여된 경우 세관은 통과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음향영상물제품(완제품) 및 전자출판물(완제품)을 수입한 후 15일(근무일 기준) 내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수속 이행 시 음향영상물제품(완제품) 및 전자출판물(완제품)의 실제 수입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출판기구;  (3) 수출국(지역);  (4) 국제표준녹음코드(ISRC) 또는 전자출판물코드 등;  (5) 언어;  (6) 수량;  (7) 유형;  (8) 수입항;  (9) 매개체 형식;  (10) 수입통관 허가일;  (11) 수입허가문서 번호;  (12) 구매자;  (13) 제출이 필요한 기타 서류.  제9조 국내로 수입된 음향영상물제품(완제품) 및 전자출판물(완제품)의 사용은 기타 법률•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신문•정기간행물을 수입하는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정기구독자의 수입출판물 정기구독 관리방법>의 요구에 따라 해당 수입허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허가문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규정에 따라 검사•통관허가 수속을 처리한다. 허가문서가 결여된 경우 세관은 통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신문•정기간행물을 수입한 후 분기 별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수속 이행 시 실제 수입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문•정기간행물 명칭;  (2) 출판기구;  (3) 수출국;  (4) 국제표준일련간행물번호(ISSN);  (5) 언어;  (6) 수량;  (7) 유형;  (8) 수입항;  (9) 출판 주기;  (10) 수입통관 허가일;  (11) 정기구독자;  (12) 제출이 필요한 기타 서류.  제12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는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 수입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출판물수입경영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수입함에 있어 <출판 관리조례>, <음향영상물제품 관리조례> 등 법규•규장 및 관련 규정을 엄격히 따라 그가 수입하는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심사(수입 전 내용심사와 수입 후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한 심사 포함)를 진행하여야 하며 유형별로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 수입 비안(備案) 수속 및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국내로 수입한 후 각 달력연도의 연말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수속 이행 시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 베이스의 실제 수입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해외 공급업체;  (3) 수출국(지역);  (4) 언어;  (5) 이용자 수;  (6) 유형;  (7) 개통 시기;  (8) 현행 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연월 및 만료연월;  (9) 수입금액;  (10) 국내 구매업체;  (11) 동적 감독관리인력;  (12) 감독관리시설의 IP주소;  (13) 감독관리 방식;  (14) 제출이 필요한 기타 서류.  제14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실제로 수입한 출판물에 대한 내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내용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가 이 방법의 요구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판 관리조례>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급 이상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위반정도가 심각한 경우 기한부 휴업•재정비를 명하거나 원(原) 증서발급기관이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제16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가 내용심사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판 관리조례> 제25조, 제26조에 규정한 금지내용이 포함된 출판물을 수입하는 경우 <출판 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급 이상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위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출판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경영액이 1만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하며; 위법경영액이 1만위안 미만일 경우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반정도가 심각한 경우 기한부 휴업•재정비를 명하거나 원(原) 증서발급기관이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제17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가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완비되지 못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 방법의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성급 이상의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수입 행위의 중단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위반정도가 심각한 경우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18조 이 방법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해관총서와 회동하여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9조 이 방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出版物进口备案管理办法**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海关总署令（第12号）  《出版物进口备案管理办法》已经2016年4月26日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局务会议通过，并经海关总署同意，现予公布，自2017年3月1日起施行。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局长：聂辰席  海关总署署长：于广洲  2017年1月22日  第一条 为规范出版物进口备案行为，加强出版物进口管理，根据《出版管理条例》《音像制品管理条例》等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出版物进口活动，适用本办法。  本办法所称出版物，是指进口的图书、报纸、期刊、音像制品（成品）及电子出版物（成品）、数字文献数据库等。  本办法所称出版物进口经营单位，是指依照《出版管理条例》设立的从事出版物进口业务的单位。  第三条 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按照许可的业务范围从事出版物进口经营活动。  第四条 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按照《出版管理条例》及本办法的要求，向省级以上出版行政主管部门办理进口出版物备案手续。出版物进口经营单位提供备案材料不齐备或不真实的，不予备案。  负责备案的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应将相关备案信息报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对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的备案工作进行检查指导。  第五条 进口图书的，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于进口前向省级以上出版行政主管部门申请办理进口备案手续。申请备案时，需提交备案申请和出版物进口经营单位出具的审查意见，备案申请包括以下信息：  （一）图书名称；  （二）出版机构；  （三）进口来源国家（地区）；  （四）作者；  （五）国际标准出版代码（ISBN)；  （六）语种；  （七）数量；  （八）类别；  （九）进口口岸；  （十）订购方；  （十一）需要提交的其他材料。  第六条 省级以上出版行政主管部门在受理出版物进口经营单位进口图书备案申请材料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图书目录的备案手续。准予备案的，负责备案的出版行政主管部门为出版物进口经营单位出具通关函。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向海关交验通关函，海关按规定办理报关验放手续，没有通关函海关不予放行。  第七条 进口音像制品（成品）及电子出版物（成品）的，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按照《音像制品进口管理办法》《电子出版物出版管理规定》的要求，履行相应进口审批手续。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向海关交验批准文件，海关按规定办理报关验放手续，没有批准文件海关不予放行。  第八条 出版物进口经营单位进口音像制品（成品）及电子出版物（成品）后15个工作日内报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备案。报送备案时，需按音像制品（成品）及电子出版物（成品）的实际进口情况提交以下信息：  （一）名称；  （二）出版机构；  （三）进口来源国家（地区）；  （四）国际标准音像制品编码（ISRC）或电子出版物编码等；  （五）语种；  （六）数量；  （七）类别；  （八）进口口岸；  （九）载体形式；  （十）进口通关放行日期；  （十一）进口批准文号；  （十二）订购方；  （十三）需要提交的其他材料。  第九条 进口后的音像制品（成品）及电子出版物（成品）的使用，应当符合其他法律法规等相关规定。  第十条 进口报纸、期刊的，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按照《订户订购进口出版物管理办法》的要求，履行相应进口审批手续。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向海关交验批准文件，海关按规定办理报关验放手续，没有批准文件海关不予放行。  第十一条 出版物进口经营单位进口报纸、期刊后，每季度报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备案，同时抄送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出版行政主管部门。报送备案时，需按照实际进口情况提交以下信息：  （一）报刊名称；  （二）出版机构；  （三）进口来源国家（地区）；  （四）国际标准连续出版物号(ISSN）；  （五）语种；  （六）数量；  （七）类别；  （八）进口口岸；  （九）刊期；  （十）进口通关放行日期；  （十一）订户；  （十二）需要提交的其他材料。  第十二条 通过信息网络进口到境内的境外数字文献数据库，必须由国务院出版行政主管部门批准的有境外数字文献数据库网络进口资质的出版物进口经营单位进口。出版物进口经营单位办理境外数字文献数据库进口时，应当严格按照《出版管理条例》《音像制品管理条例》《订户订购进口出版物管理办法》等法规规章及相关规定，对其进口的境外数字文献数据库进行内容审查（含进口前内容审查和进口后更新内容审查），分类办理数字文献数据库进口备案、审批手续。  第十三条 出版物进口经营单位进口境外数字文献数据库后，于每个自然年年末报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备案。报送备案时，需按境外数字文献数据库实际进口信息提供以下材料：  （一）名称；  （二）境外供应商；  （三）进口来源国家（地区）；  （四）语种；  （五）用户数量；  （六）类别；  （七）开通时间；  （八）当前合同起止年月；  （九）进口金额；  （十）国内订购单位；  （十一）动态监管人员；  （十二）监管设施的IP地址；  （十三）监管方式；  （十四）需要提交的其他材料。  第十四条 出版物进口经营单位应当对实际进口出版物进行内容审查并每月定期向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提交审读报告。  第十五条 出版物进口经营单位未按本办法要求履行备案手续的，根据《出版管理条例》第六十七条的规定，由省级以上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第十六条 出版物进口经营单位未履行审读责任，进口含有《出版管理条例》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禁止内容的，根据《出版管理条例》第六十二条的规定，由省级以上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出版物、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限期停业整顿或者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  第十七条 出版物进口经营单位备案时提交的材料不齐备、不真实或违反本办法其他规定的，由省级以上出版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进口行为，并给予警告；情节严重的，处3万元以下罚款。  第十八条 本办法由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会同海关总署负责解释。  第十九条 本办法自2017年3月1日起施行。 |